닭경제능력검정 세부실시요령

양계협 고시 제88-4-1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제6항 규정에 의거 닭경제능력검정세부실시요령을 제정(기존의 자체규정 및 각종지침 등을 정비통합)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첨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1988년 4월 1일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닭경제능력검정세부실시요령

1988. 4. 1제정(농림수산부 중축 27420-475로 승인)

제1조(목적) 본 요령은 닭경제능력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농림수산부 닭검정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검정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함에 있음.

제2조(검정위원회) ① 본 검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닭경제능력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본회 분과 및 전문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다만 검정위원은 본 검정사업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이여야 한다.

제3조(검정신청) ① 검정은 국내외에서 종계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향후 종계업을 영위코자 하는자 또는 종계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전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 회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교배양식을 명시한 검정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적부심사 및 확정통보) 제3조 규정에 의거 검정신청이 완료되면 회장은 검정위원회의 적부심사를 거쳐 농장별검정출품 확정여부를 검정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검정신청 물량이 본회가 확정한 검정계획 이내일때는 검정위원회의 심의(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정출품료) ① 검정신청을 한자는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검정신청서제출과 동시 다음의 검정출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란계 1구(계종)당 200,000원
2. 육용계 1구(계종)당 100,000원
3. 전 1-2호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에서 직접 출품하는 경우는 1구(계종)당 산란계는 400,000원, 육종계는 200,000원으로 한다.

② 전 제1항 규정에 의한 출품료 납부후 제4조 규정에 의한 적부 심사결과 출품이 제외되었거나 제6조 제5항단서 규정에 의거 검정을 취소 또는 중지 하였을 때는 기위 납부된 출품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6조(종란수집)

① 검정을 목적으로 출품하는 종란은 교배방식이 명확하고 닭의 법정 전염병 또는 본위원회에서 지정한 전염병의 검진검색 및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종계군으로 부터 얻어진 종란이어야 한다.

② 검정신청을 한자는 별도 회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농림수산부 닭검정요령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종란을 확보하고 종란수집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하며 검정용 소요종란을 제공(출품)하여야 한다.

③ 검정용 종란은 검정위원장 또는 검정위원회에서 지명한 검정위원이 각 검정신청농장(부화장, 종계장)에 출장하여 전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종란 중에서 검정소요종란을 임의 축출하여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이하 검정소라 칭한다)까지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외국에서 종란을 직접 출품하는 때에는 전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출품자 책임하에 전 제1항내지 제2항 규정에 의한 종란을 검정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⑤ 검정신청자는 검정용 종란을 제공(출품)한후 어떠한 이유로서 기제공(출품)한 종란의 반환 또는 대가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정의 취소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회장은 종란수집 운반중 종란이 다수 깨지는등 불상사로 검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는 검정위원장과 협의하여 출품자의 동의를 받아 검정의 취소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호부여) ① 수집된 종란 및 부화발생된 초생추에 대하여는 검정위원장 또는 검정위원장이 지명하는 검정위원이 암호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종란 및 초생추 기호부여는 동일한 위원이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 제1항의 암호 기호 부여부 정부 2통을 작성 암호 기호 부여위원이 봉인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전 제2항의 종란 및 초생추 기호부여부는 정본은 협회장 부본은 검정위원장 책임하에 별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부화 및 발생) ① 검정소장은 종란수집이 완료되면 각구(계종)별로 종란을 선별하고 종란의 각구별 암호 기호를 종란에 표시한후 입란 부화하여야 한다.

② 검정소장은 병아리가 발생되면 검정계를 입추전에 초생추의 구별 반복별 암호 기호가 날인된 익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검정계의 사육장소) 검정계의 사육장소는 검정위원장 또는 검정위원장이 지명하는 검정위원 책임하에 난수표 또는 추첨방식에 의거 각구별, 반복별로 무작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검정계의 사양관리 방법) ① 검정계는 별표 "2"내지 "3"의 산란계 및 육용계 경제능력 검정계 사양관리지침에 의거 사양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전 제1항의 사양관리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는 검정위원회 결의로서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정위원회 결정사항은 월간양계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정성적조사 및 분석) ① 검정소장은 별표 "4"내지 "16"의 대장을 비치하고 검정개시일 부터 검정종료시 까지 농림수산부 닭검정요령 제11조 제5항 및 제12조 제4항 규정의 조사사항에 대한 성적을 조사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정소장은 다음 각호에 의거 전 제1항의 검정성적을 검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간성적보고 : 검정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검정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
2. 최종성적보고 : 검정 종료후

③ 검정위원회에서는 전 제2항 규정에 의한 검정성적을 토대로 검정결과를 분석한 후 분석결과에 따른 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결과 분석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검정결과 제반성적에 대한 정밀분석
2. 검정조사항목에 대한 각 출품 구별 유의성 분석
3. 각 출품 구별 경제성 분석

④ 전 제3항 단서 규정을 시행할때는 검정위원회의 결의로서 특정한 위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기호 부여부 개봉) 제7조 규정에 의한 기호부여부는 검정이 종료되어 검정 최종결과를 분석하는 검정위원회 석상에서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경제성 분석방법) 제11조 제3항 단서 제3호 규정에 의한 경제성 분석방법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으로 표시하되 수입과 지출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란계

가. 수입금액은 생산란(생산량중 평량이 가능한 파

손란을 포함한다)의 금액과 검정종료한 닭의 판매금액으로 하되 금액산출은 본회(위원회)에서 조사한 가격 또는 실지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나. 지출금액은 초생추 가격에 사료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초생추 가격은 검정계 입추 당시 본회에서 조사한 출품 계종별 시가 또는 본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적용하며 사료비는 본회에서 조사 또는 실지 투입한 금액을 적용한다.

2. 육용계

가. 수입금액은 검정종료한 닭의 판매금액으로 하되 금액산출은 본회에서 조사한 단가 또는 실지판매금액을 적용한다.

나. 지출금액은 초생추 가격에 사료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초생추 가격은 검정계 입추 당시 본회에서 조사한 출품계종별 시가 또는 본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적용하며 사료비는 본회에서 조사 또는 실지 투입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14조(검정결과 공표) 검정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검정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공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정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검정성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규정외 적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 또는 본회 정관 및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요령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요령 시행전부터 검정중인 제21회 산란계 및 제22회 육용계 검정에 대하여도 본요령 시행일 이후 부터는 본 요령을 적용한다.

3. (유사 규정폐지) 축산 27420-786(86.5.19)로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 시행중인 본회 닭 경제능력검정 규정은 본 요령 시행일로 부터 이를 전면 폐지한다.

※제10조 제1항 별표 "2"-"3"의 산란계 및 육용계 경제능력검정계 사양관리 지침은 월간양계 85년 7월호(통권 189호) 124p 및 87년 8월호(통권 214호) 127p에 기위 기재된 사항이므로 본란 이기를 생략함.

○제11조 제1항 별표 "4"-16호 서식은 검정소 자체에서 사용하는 행정서식이므로 본란이기를 생략함. 양계

본회에서는 양계농장의 구인난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 음

● 양계관련업체에 구직을 원하시는 분
● 직원이 필요한 농장

본회로 연락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읍니다.

대한양계협회 : ☎ (02) 752-3571·2